

제292회 임시회
2010. 7. 23.(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7.23.(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10년 7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7. 21,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가. 제안이유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
분교장을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소규모
초등학교를 폐지함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학교 폐지

가)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010.9.1.	초등학교 폐지 (휴원 중)

나)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010.9.1.	학생수 감소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전문위원 구명회)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운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소재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및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을 남일초등학교에 통합하고자 「별표4의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 과 「별표6의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병설유치원」 란을 삭제하는 것임.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 2010년 6월 30일 현재 재학생 3명이며, 향후 학생수 증가요인이

없는 두산분교와 원생이 없어 휴원 중인 두산분교 병설유치원을 2010년 9월 1일자로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및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통폐합에 따른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를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6의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 초등학교(제2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td> <td style="padding: 5px;">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번지</td> </tr> </tbody> </table> <p>[별표 6] 유치원(제2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td> <td style="padding: 5px;">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번지</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번지	명 칭	위 치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번지	<p>[별표 4] 초등학교(제2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삭 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삭 제〉</td> </tr> </tbody> </table> <p>[별표 6] 유치원(제2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삭 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삭 제〉</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삭 제〉	〈삭 제〉	명 칭	위 치	〈삭 제〉	〈삭 제〉
명 칭	위 치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번지																
명 칭	위 치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번지																
명 칭	위 치																
〈삭 제〉	〈삭 제〉																
명 칭	위 치																
〈삭 제〉	〈삭 제〉																

관계법령 발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일부개정]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10. 학교통·폐합 현황

□ 목 적

- 이농현상 및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불가하여 통·폐합을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경쟁력 강화

□ 현 황

○ 폐지학교

(학생수 기준 : 2010.4.1)

대 상 교	위 치	학생수	폐지년월일	비고
남일초두산분교장병설유치원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	2010. 9. 1	휴원중
남일초두산분교장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5	2010. 9. 1	

○ 통합교

학교명	구 분	만4세반		만5세반		혼합반		특수학급		계	
		완수	학급수	완수	학급수	완수	학급수	완수	학급수	원아수	학급수
남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전					20	2			20	2
	통합후					20	2			20	2

학교명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특수학급		계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남일초등학교	통합전	46	2	45	2	52	2	72	3	76	3	53	2	4	1	344	15
	통합후	46	2	45	2	54	2	72	3	76	3	56	2	4	1	349	15

□ 기 타

○ 폐지학교 학생 통학편의 지원계획

- 차 량 : 콜벤 이용
 - 소요액 : 1,400천 원 [1일 14,000원×100일(2학기 수업일수)=]
- 교육장재량사업비(청원교육청) 지원계획
- 2011년이후 임차차량, 택시비, 통학비의 직접지급 등 다양한 방법 검토